

□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: 1

감사결과 처분 요구서

【제 목】 수의계약

(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공사 계약시 담보책임 존속
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설정 소홀)

【기관명】 □□과

【행정상】 시 정

【재정상】

【지적내용】

가. 현황

사업명	사업개요	계약금액 (천원)	사업기간	계약상대자	비고
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보수공사	- □□□□□□□ 및 - ◆◆◆◆◆ 교체	27,940	2017.09.18. ~ 2017.10.02.	●●●●● ○○○○○○○	

나. 위법·부당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제1항에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”로 규정되어 있으며,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8조 제1항에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표1의 공종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

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”로 제70조 제1항에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의 각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- 그런데도 □□과에서는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공종을 확인하여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정하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, 담보책임존속기간 및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또한,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3년, 하자보수보증률은 100분의 2가 적정함에도 공사 준공 시 “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”을 제출받으면서 담보기간을 2년, 보증금율은 3%로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.

【처분요구】

□□과장은

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맞게 계약자로부터 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받도록 하고, 향후 업무추진 시 담보책임존속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등을 확인하여 업무누수가 없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